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주를 위한 세무안내」



- ✓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비사업자 포함)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적,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건표) 한글, 엑셀, PDF 다운로드

-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신청에 의해 반기별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매월 납부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급여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매월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납부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지급시기</th><th>신고·납부시기</th></tr> </thead> <tbody> <tr> <td>1월부터 6월까지</td><td>7월 10일까지</td></tr> <tr> <td>7월부터 12월까지</td><td>다음연도 1월 10일까지</td></tr> </tbody> </table>	지급시기	신고·납부시기	1월부터 6월까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지급시기	신고·납부시기						
1월부터 6월까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 ✓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정산*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 ✓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 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연말정산 (하단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에서 조회 가능



※ 스마트폰으로 좌측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세 신고안내 ▶ 개인·법인 신고안내 ▶ 원천세·연말정산